

의안번호	제 380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347회)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발 의 자	윤은희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6년 4월 18일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윤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0
----------	-----

발의연월일 : 2016년 4월 18일

발 의 자 : 윤은희, 임희무, 엄재창,  
김영주, 연철흙, 최광옥,  
박한범

##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서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등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조례에서 분리 발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 발주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설비업의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설공사에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 2조 및 제3조)

-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기계설비의 분리발주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관련부서 협의 : 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월15일 ~ 21일(6일간)
  -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충청북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발주할 때에 기계설비공사를 건설공사에서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부실 시공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기계설비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별표 1의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3. “기계설비업”이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동일 구조물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5.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 가목을 준용한다.
  -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등록·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품질향상과 기계설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계설비 분리발주)** ①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리하거나 공사량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에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③ 도지사는 건설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설비업체의 책무)** 기계설비업체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  
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기계  
설비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산  
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  
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별표 1] <개정 2012.2.2>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0. 기계설비공사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4.11.24., 2015.8.19.>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써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군·구는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